



## 로버스카우트 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차 개정 2024. 10. 13.)

### 제1장 협의회

#### 제1절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현장 제146조에 의하여 제정 시행한다.

제2조(명칭) ‘한국스카우트연맹 로버스카우트 중앙협의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한다.), 외국에 대해서는 ‘National Rover Scout Committee, Korea Scout Association로 한다’. (개정 24.10.13)

제3조(구성) 로버스카우트 전국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과 지방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17)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로버스카우트 행사의 주관 및 실시와 발전에 관한 사업 (개정 99.12.17)
- 프로그램 연구 개발
- 비버스카우트·컵스카우트·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의 조직, 연맹 훈육 활동 지원 (개정 24.10.13.)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절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인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3명
- 총무 1명 이내
- 감사 1명
- 지방협의회장(신설 09.11.13.)



**제6조(임원의 선출)** 전조 1, 2항의 임원은 로버스카우트 전국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임이 가능하고,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개정 24.10.13.)

1. 회장, 부회장은 각각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직 위원 과반수의 유효표 득표로 당선된다.
2. 제1항의 당선자가 없을 시 재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를 최종당선자로 한다. (개정 24.10.13.)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4.10.13.)
4. 감사는 전년도 중앙협의회 회장, 부회장 중 한 명으로 전임 임원의 자발적인 협의로 임명된다. (개정 24.10.13.)
5. 전년도 임원진들은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차기 임원진들에게 전년도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개정 24.10.13.)
6.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 2주 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로 제출한다. (개정 24.10.13.)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 2월 초일부터 차년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4.10.13.)

**제8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 규정의 모든 사업을 총리하고, 로버스카우트 전국총회와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99.12.17)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부회장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4.10.13.)
3. 총무의 부재 시 3명의 부회장 중 회장이 한 명을 지명하여 총무의 임무를 대신한다. (개정 24.10.13.)
4. 감사는 본 회의 전반사업, 특히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와 전국총회에 보고 및 진술할 수 있다.
5. 중앙협의회 임원은 회의 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지만, 감사는 표결의 재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11.11.20)

**제9조(임원의 자격)**

1. 본 회의 모든 임원은 연차등록을 해야 한다.
2. 총무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지도자훈련 중급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4.10.13.)
3. 본 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본 조 제2항의 자격과 더불어, 본 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거나 지방특수연맹의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4.10.13.)
4.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4.10.13.)
5.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방·특수연맹 지방협의회의 임원으로 역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4.10.13)



## 제3절 회 의

### 제1관 전국총회

**제10조(전국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 전국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전국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중앙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자발적인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2.01.28.)
2. 성원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4.10.13.)
3. 지방협의회 회장의 부재 시 위임장을 해당 지방연맹 소속 대리인에게 부여하여 정족수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11.11.19.)
4. 전 항의 대리인이 없을 경우 중앙협의회로 해당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1.02.05.)
5. 국가 재난, 전시사태,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의 안전상정과 중앙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찬동으로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면 총회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신설 21.02.05.)

**제11조(대의원)** 전국총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대의원 : 제5조에 명기된 임원
2. 지방대표대의원 : 당해 연도 로버스카우트 등록 연맹당 2명 (개정 09.11.13)

**제12조(총회의 기능)** 전국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결과 및 계획보고
3. 중앙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2관 중앙위원회

**제14조(구성)** 제5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중앙위원회의 소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7.12.20)



**제16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의결 실행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전국총회 의안 심의
3. 기타 로버스카우트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99.12.17)
4. 로버스카우트 협의회 운영 규정 의안 심의 (개정 11.11.20)

**제17조(중앙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방법)** 성원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거수를 통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3차 투표에서도 가결되지 않는 경우 부결한다. (개정 11.11.19.)

**제18조(중앙상임위원회)** ①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례적인 사항과 경미하거나, 특히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그 구성은 제5조 제1, 2, 3, 4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상임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실제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개회하지 아니한다.

#### 제4절 각종 특별위원회

**제19조(설치 및 종류)** 본회는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받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기구로 자문위원회, 육성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 설치기간, 업무구성 등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4. 10. 13.)

#### 부칙

본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뒤, 의장이 공표하는 즉시 그 효력을 지닌다. (신설 21. 02. 05.)  
위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신설 21. 02. 05.)



## 부칙(삭제금지)

- 본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 
- 
- 
-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위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신설 21.02.05.)
-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